장학금 지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설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장학금의 구분 및 종류

제4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내장학금의 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면개정 `20.3.24.)

1. 이사장장학금
2.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3. 성적우수장학금
4. 체육특기장학금
5. 국가유공자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6. 학생회장학금
7. 교원 및 직원복지장학금
8. 학군단장학금
9. 공로장학금
10. 외국인학생장학금(개정 `24.9.1.)
11. 교내봉사장학금
12. VERUM장학금
13. 국가시험특별장학금
14. 총장특별장학금
15. 가톨릭관동가족장학금
16. 교외봉사장학금
17. 교원양성특별장학금
18. 해외연수.유학장학금
19. 관·군·산학협력장학금(개정 ‘24.2.24)
20. 어학우수장학금
21. 편입생장학금
22. 교환학생장학금

23. 지역장학금
24. 학교장추천장학금
25. 커리어개발장학금
26. 성적향상장학금
27. (삭제 '24.9.12)
28. 동문사랑장학금
29. 면학장학금
30. 글로벌장학금
31. 모범다독자장학금
32. 취·창업지원장학금
33. 선취업후진학자특별전형장학금
34. 성인학습자 및 만학도 장학금(개정 '24.2.24)
35. 계약학과 장학금(신설 '24.2.24)

② 교내장학금의 선정 기준과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교외장학금의 종류)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가 장학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별표 2]와 같다.

제3장 장학금의 지급

제7조(신청자격) ① 재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휴학자
2. 징계처분이 종결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신청절차)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장학종류별로 정해진 양식과 추천절차에 따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18.6.1.)

제9조(대상자) ① 장학대상자는 학업성적과 품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② 장학대상자는 직전학기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개정 `15.1.1.)

③ 성적포기로 인한 장학생 자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기불일치 조기복학자의 8차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은 [별표 3] <성적우수장학 생 선정기준>을 따른다.

⑤ 장학대상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전입학부(과)의 장학금을 적용 받는다.

⑥ 장학대상자가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혜택이 소멸된다.

⑦ (삭제 `24.9.1.)

⑧ 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교외봉사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커리어개발장학금, 면학장학금, 글로벌장학금, 모범다독자장학금, 취·창업지원장학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8.3.1.)(개정 `19.9.24., `20.3.24., `24.9.1.)

제10조(선정기준) 장학생 선정기준은 [별표 1]의 수혜자격기준과 같다.

제11조(교외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자가 지정된 교외장학생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② 미지정 장학금은 추천 분야별, 대학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배정하고 학부(과)장을 거쳐 학장이 추천한다.(개정 `18.6.1.)

제12조(수혜범위의 제한) ① 장학금의 최대수혜범위는 등록금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수여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전항의 수혜범위에서 학생회장학금, 교내봉사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커리어개발장학금, 공로장학금, 교외봉사장학금, 글로벌장학금, 모범다독자장학금, 취·창업지원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6.1.1., `16.12.13., `17.9.1., `20.3.24.)

③「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수혜자에게 유리한 장학금 1종을 지급 한다(신설 '25.5.1).

제13조(수혜기간의 제한)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학기로 하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지급시기)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학기마다 등록전에 지급한다.

제15조(사무보고)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기별로 장학사무와 지급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8.6.1.)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입학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배우자, 직계자녀 및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 직계자녀에게는 종전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종 류	수 혜 자 격 기 준	장학금액	비고
교원 및 직원 복 지 장학금	**제1종** ①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와 명지대, 명지전문대의 교원 및 직원과 교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 ② 우리 대학교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명지학원 산하 기관에서 25년 이상 근속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자녀 ㅇ 위의 각호 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제2종**(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직계자녀) ① 제1종 대상교를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재직자와 직계자녀. 다만,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등록금 반액 (입학금 제외)	
편입생 장학금	1. 명지학원 산하 대학장학금 ① 명지학원 산하 대학 졸업(예정)자로 전적대학 성적 3.0 이상인 자	등록금의 50% (입학금제외) 사범대학, 의과대학은 입학금만 면제	매 학 기 성적 평점 평 균 3.0 이상

2.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4] 성적우수 장학생 선정기준은 2017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제34호의 성인학습자장학금의 장학금액은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종전규정에 의거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30%'를 지급한다.

16.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장학생 선정기준에서 "체육특기장학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번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4	체 육 특 기 장 학 금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개정 '22.9.1)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0이상(개정 '22.9.1) <삭제 '22.9.1.>	A:등록금 전액 B:등록금의 70% C:등록금의 30% D:등록금의 10% (신설 '22.9.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경과조치) [별표1]제34호의 성인학습자장학금의 휴먼서비스대학 편입학년도가 2022학년도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 규정)

장학금종류	수혜자격기준	장학금액
성인학습자장학금	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모집단위 학생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 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 단, 신·편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지급시기> - 매학기 중간고사 이후	등록금 실납입액의 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5.1.1. `15.11.24. `16.1.1. `16.12.13. `17.9.1. `18.3.1. `19.5.28. `19.5.28., `19.8.27., `19.9.24., `20.3.24., `21.3.1. `21.4.20., `22.3.1., `23.3.1, `24.2.24, `24.9.1, `24.12.1.,'25.8.1.)

〈장학생 선정 기준〉

연번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1	이 사 장 장 학 금	신입생 선발시 선정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5 이상 (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등록금 범위내	
2	신 입 생 성적우수 장 학 금	① 신입생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 (재학중 학기마다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3.5 미만일때는 해당학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다시 지급) ②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협의,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입학요강 참조	
3	성적우수 장 학 금	지급 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에게 각 학부(과), 학년별로 등록 학생수에 따라 지급	A:등록금의 100% B:등록금의 70% C:등록금의 50%	
4	체 육 특 기 장 학 금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개정 '22.9.1)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0이상(개정 '22.9.1) <삭제 '22.9.1.>	A:등록금 전액 B:등록금의 70% C:등록금의 30% D:등록금의 10% (신설 '22.9.1)	
5	국가 유공자 장 학 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학생 <선발 기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지급기준>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평점평균 1.60) 이상인 자 (신·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등록금 전액	
	북한 이탈주민 장 학 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생 <선발 기준>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급기준>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평점평균 1.60) 이상인 자 (신·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6	학생회 장 학 금	학생회와 언론사 등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자치기구의 모든 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	
7	교원 및 직원복지 장 학 금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과 배우자, 직계자녀 ②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 자녀 ③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자녀 ④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 및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①~③ : 등록금 전액 ④ 등록금의 50%	

연번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신·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8	학군단 장 학 금	학군단 무관후보생으로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	
9	공 로 장 학 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낸 자와 학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급기준> ①호의 경우,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	
10	외국인 학생 장 학 금	<한국어트랙> ① 학부 정규 과정에 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에서 다음의 한국어 능력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PBT 또는 IBT) 2급 자격증 소지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자 또는 동 기관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자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초급2급 과정 이상 이수자 ② 학부 정규 과정에 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에서 다음의 한국어 능력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PBT 또는 IBT) 3급 자격증 소지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 또는 동 기관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자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중급1급 과정 이상 이수자 ③ 학부 정규 과정에 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에서 다음의 한국어 능력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PBT 또는 IBT) 4급 자격증 소지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자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중급2급 과정 이상 이수자 ④ 학부 정규 과정에 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PBT 또는 IBT) 5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⑤ 외국인 신입생 특별장학금 (본교 한국어교육원 과정 수료 대상) : 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본교 입학전형에서 정한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여 학부 과정에 입학한 어학연수생 ⑥ 외국인 신.편입생 특별장학금 : 가톨릭관동대학교 본교 입학전형에서 정한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여 학부 과정에 입학한 자 ⑦ 가톨릭관동대학교와 해외 대학 간 학술교류 협약에 따른 교환학생 <영어트랙> ①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②TOEFL 603(CBT 250, iBT 100), IELTS 7.0, CEFR C1, TEPS 701점(NEW TEPS 387점) 이상 <지급기준>(트랙 공통)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0 이상	<한국어트랙> ①등록금의 30% ②등록금의 40% ③등록금의 80% ④등록금의 100% ⑤첫 학기 등록금의 100% ⑥첫 학기 등록금의 80% ⑦첫 학기 등록금의 80% <영어트랙> ①등록금의 40% ②등록금의 60% <중국어트랙> ①등록금의 40%	

연번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중국어트랙> 학부 정규 과정 입학전형에서 정한 중국어트랙 어학기준을 충족한 자		
11	교내봉사 장학금	교내 특정부서에서 실습·연구 등에 참여하여 봉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선발기준> - 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	
12	VERUM 장 학 금	① 학생취업지원처에서 각 학부(과)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 <선발기준> - 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② (삭제 `15. 1. 1.)	700,000원 이내 (등록금 범위 내)	
13	국가시험 특 별 장 학 금	①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 (과목)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의학과, 간호학과 제외)으로 입학한 후 국가시험을 준비 중인 자 ② 재학 중 국가고시 1차 시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에 합격한 자(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③ 국가시험지원센터에 입실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여 국가시험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가시험지원센터 입실생 5명 이내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A급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에서 모두 1등급) : 학부4년 ,석사과정 등록금 전액 면학장려금 : 매월 30만원, 생활관 입실(숙식제공) B급(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 : 학부 4년 등록금 전액 면학장려금 : 매월 20만원 생활관 입실(숙식제공) B급 및 일반 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자 :생활관 입실(숙식제공), 학부, 석사과정 등록금 면제 C급 : 30만원	
14	총장특별 장 학 금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별도로 정함	
15	가톨릭 관동가족 장 학 금	①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 등) 중 2명이 학부에 재학 중인 자 ②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 등) 중 3명 이상이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학부재학생 중 가족(부모, 형제자매 , 부부 등) 중 2명 재학시 1명에게 등록금의 50 % 지급 대학원생포함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 등) 중 3명이상 재학 시 1명에게 등록금의 70%지급	
16	교외봉사 장 학 금	① 사회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하계 및 동계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	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	
17	교원양성 특 별 장 학 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과목)에서 1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신입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 교수나 전문직에 진출하려는 자(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5 이상 (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 재학중 혜택 대학4년,석사,박사과정 등록금 전액, 생활관제공(숙식제공), 면학장려금:매월 50만원 학부재학기간 동안 방학중 1회의 단기 어학	

연번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연수 기회부여, 학부재학기간중 외국 자매대학 교환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1년간 교환학생장학금 지급 (학비, 생활비) * 해외유학 혜택(석, 박사과정) 관련세부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명문 대학원에 유학할 경우 왕복항공료, 초기정착금, 우리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하는 학비 지급	
18	해외연수. 유학 장 학 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 ② 우리 대학교와의 자매결연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등록금 범위 이내	
19	관.군.산 학협력 장 학 금	①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공무원(군인) 및 산학협력기관에서 재직중인 자 ② 군장기 복무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신·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등록금50%	
20	어학우수 장 학 금	영어(토플, 토익)、일어、중국어 등 어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자.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함) <지급기준> 신청 대상: 3.4학년	50만원	
21	편입생 장 학 금	의과대학을 제외한 편입생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등록금의 50%	
22	교환학생 장 학 금	<언어별 자격기준> 1. 영어:NEAT 1급 196점이상, TOEIC 650이상, TOEFL(IBT/CBT/PBT) 64/180/507이상, IELTS 6.0이상, TEPS 520이상, TEPS-S 110이상, TOEIC-S 110이상, OPIc IM1이상 2. 중국어:신HSK5급이상 3. 일본어:신JLPT N1 /JPT 660이상 (다만, 연변대는 별도 적용함) 공인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	한학기당 50만원 (1년지급)	
23	지 역 장 학 금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자(최종 등록자)(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지급기준>(2회차 지급시)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150만원 (재학 중 2회)	
24	학교장 추천 장 학 금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고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가톨릭계 고교 출신 자	100만원(1회)	
25	커리어 개발 장 학 금	① 국가기관 자격증 취득자 또는 공연, 전시 및 경진대회 입상한 자 중 학과 또는 부서의 제청으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대회에서 총장 명의로 수상하는 입상자 ③ 우리 대학교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① 50만원 이내 ②~⑤ 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	

연번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④ 튜터링(멘토링)에 참가한 자 ⑤ 학생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26	성적향상 장 학 금	지급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그 이전 직전학기의 장학성적 평점평균에 비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기준〉 ① A급 : 평점평균 1.0이상 향상 ② B급 : 평점평균 0.7이상 향상 ③ C급 : 평점평균 0.5이상 향상 ④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A급:10만원 B급:7만원 C급:5만원	
27				삭제
28	동문사랑 장 학 금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신·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등록금의 50% 단, 의학과,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제외	
29	면학 장 학 금	각 대학, 학과 및 생활관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추천된 자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30	글로벌 장 학 금	국제화 프로그램인 해외연수, 해외문화탐방 연수자로 선발된 자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31	모범 다독자 장 학 금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한 독후감 경시대회 및 전공 관련 도서 다독자로 선발된 자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32	취•창업 지원 장 학 금	① 우리 대학교 및 외부 주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②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지원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따라 선발된 자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33	선취업 후진학자 특별전형 장 학 금	선취업 후진학자 전형 모집단위 입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누적 학기 총평점평균 2.5 이상 (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선정)	등록금의 50%	
34	성인 학습자 및 만학도 장 학 금	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및 만학도전형 모집단위 학생 **단 편입생은 제외**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단,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지급시기> -매학기 중간고사 이후	등록금 실납입액의 30%	
35	계약학과 장학금	계약학과 모집단위 학생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단,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등록금의 30%	

[별표 2]

〈교외장학금〉

연번	장 학 금 종 류	수 혜 자 격 기 준
1	KT IT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2	강릉제일교회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3	건축학부 교수 출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4	공군조종장학생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공군에 지원한 학사장교 예정자
5	가톨릭관동사랑조성 기금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6	가톨릭관동장학회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7	관맥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8	국가근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9	군장학생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육군에 지원한 학사장교 예정자
10	내곡주민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11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농.어촌 거주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12	농협문화복지 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13	농협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14	대한건설협회 장학금	토목.건축관련 학과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15	동양장학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사상이 건전하나 학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삼척시 소재고교 졸업자로서 부모가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
16	동창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17	드림사랑장학금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입생 :고교내신 1/2이상이 6등급이내 또는 수능3개영역(언어, 수리,외국어) 6등급이내 - 재학생: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율평균 80점이상 (단, 장애인(본인)은 70점 이상)
18	디딤돌장학회장학금	장애가정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19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신입생 : 고교내신 1/2이상이 6등급이내 또는 수능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 이내 - 재학생: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율평균 80점이상 (단, 장애인(본인)은 70점 이상)
20	사랑의 띠잇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며, 졸업 후 5년내에 상환하여야 함 、추천인원 : 각 단과대학 1명
21	삼화지봉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22	서암복지장학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23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출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24	신라문화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직원자녀 장학금
25	신세계(자판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26	신양문화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27	아산사회복지사업 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학업성적이 3.5 이상인 자

28	영풍문화재단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자
29	옥포장학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관련학과 학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30	우당장학금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31	우덕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32	우학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33	이공계 국가장학금	이공계열 재학생이며, 입학성적 중 과학탐구영역과 수리영역의 성적이 기준에 준하는 자
34	인문계 국가장학금	인문계열 신입생,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35	정수장학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학업성적이 5% 이내인 자
36	정인욱학술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37	주심장학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38	지도자육성재단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39	청송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40	촛불장학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41	학군동지회장학금	ROTC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42	한국관광협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43	한국소방안전협회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44	해군장학생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해군에 지원한 학사장교 예정자
45	등록금장학금	강원도 고교 출신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기초 차상위~5분위에 해당하는 자
46	보건장학금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학 · 간호학)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47	본솔김종한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48	산학재단디딤돌장학금	신입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49	의용소방대장학금	지자체 의용소방대 자녀
50	서울희망장학금	서울 시민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자
51	성보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52	쌍용곰두리장학금	예체능 분야 전공학생으로 국내외 예.체능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장애학생
53	해성문화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별표 3] (개정 `14.9.1., `16.12.13., `20.3.24.)

〈성적우수장학생 선정기준〉

재학생수 (등록학생수)	장학금액 (감면비율)	선발인원	비 고
10명 미만	50%	1	다만,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10명-19명	70%	1	
20명-29명	100%	1	
30명-39명	100%	1	
	50%	1	
40명-49명	100%	1	
	50%	2	
50명-59명	100%	1	
	50%	3	
60명-69명	100%	1	
	70%	1	
	50%	2	
70명-79명	100%	1	
	70%	1	
	50%	3	
80명-99명	100%	1	
	70%	2	
	50%	3	
100명-129명	100%	1	
	70%	2	
	50%	5	
130명-159명	100%	1	
	70%	3	
	50%	6	
160명-179명	100%	1	
	70%	3	
	50%	9	
180명-199명	100%	1	
	70%	4	
	50%	9	
200명 이상	100%	1	
	70%	5	
	50%	10	